18.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: 2019년 4월 12일

○ 발의의원 : 송영헌 의원, 강민구 의원, 강성환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태원 의원, 김혜정 의원, 이진련 의원, 정천락 의원, 홍인표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
○ 상정일자 :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19년 5월 1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송영헌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
○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
○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○ 안전교육의 실시, 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)

○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위원회 구성 및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)

○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○ **본 제정 조례안은**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
○ **주요 내용으로는**

- **안 제2조에서**, '교육안전', '교육기관', '안전교육', '안전문화'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
- **안 제3조에서**,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가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규정함
- **안 제4조에서**, '교육활동안전', '생활안전', '시설안전', '교통안전', '보건안전', '급식안전', '교육환경안전', '재난안전'에 대한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함
- **안 제5조에서**,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
- **안 제6조에서**, 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
<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>

1.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
2.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육안전 관련 모든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
4.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·평가에 관한 사항
5.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**안 제7조에서**, 종합계획을 기초로 교육기관의 장이 매년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- **안 제8조에서**, 교육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
- **안 제9조에서**,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안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
- **안 제10조에서**,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각종 행사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**안 제11조에서**, 교육감이 종합계획 등을 심의,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
- **안 제12조에서**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 위원 및 외부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- **안 제13조에서**,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
- **안 제14조에서**, 회의 개최 및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- **안 제15조에서**, 교육감이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

○ **검토 결과**

- **본 제정 조례안은**,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
- **특히**,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이 체화될 수 있도록 최근 구축된 안전체험시설[12]을 활용하여 학생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
- **다만**, 교육안전은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에서부터 재난안전까지 범위가 넓은 만큼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, 이와 함께 새롭게 설치되는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**아울러**, 안전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부모·지역단체 등과의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12) 안전체험시설 : 유(유아교육진흥원), 초(팔공산수련원), 중(낙동강수련원), 고(해양수련원)

5. 토론요지

○ 없　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　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음